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2.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행복나눔과]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행복나눔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 7. 22.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시설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상화로 371 비둘기 1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2,896.59㎡입니다.
 -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7월 22일 설치하여,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의 사회복지관 사업과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구 특수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관리 등입니다.

□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년 3.~4월중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4~5월중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5월말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운영주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00924032
----------	----------

제출일자: 2024. 2. 28.

제출자: 달서구청장
(행복나눔과장)

1. 제안이유

-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상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 7. 22.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0조

○ 필요성

-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여 복지서비스 질 향상 도모

다. 위탁사무 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 사회복지관 사업(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등에 근거한 사무
- 기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추진 등

라.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규 모	現 위탁현황		비 고
			위탁기간	수탁기관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상화로 371 (상인동)	지하1, 지상3층 (연면적 2,896.59㎡)	2019. 7. 23. ~ 2024. 7. 22.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마. 민간위탁기간: 5년(2024. 7. 23. ~ 2029. 7. 22.)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운영의 효율성과 민간재원 조달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

-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및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여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용이
- 법인의 자체 재정과 후원금 등 재원 조달이 용이하고 운영 및 인력 비용 절감 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
- 다양한 성과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욕구조사, 프로그램 성과 및 만족도 조사 측정이 유리하며, 현장의 변화와 주민 수요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영·적용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1 참조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2 참조

다.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운영 계획: 붙임3 참조

라. 향후 추진일정

-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및 접수: 2024. 3. ~ 4월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2024. 4. ~ 5월
- 선정결과 공고: 2024. 5월
- 위탁계약 체결 등: 2024. 5월

붙임 1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90일 전까지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에 의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해당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시설의 향후 운영계획
2. 대표자 및 상근근무자의 전문성
3. 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4. 제8조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사유 등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예산지원액 및 계약위반시의 책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위탁기간 등) ① 복지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법인유형 및 목적, 법인의 재산, 사회복지 사업 운영실적 등)
2.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3. 재무 구조의 안정성
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문화·보건분과 자문결과

검토기준	검토의견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종합적인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 · 위탁운영을 통한 인력확보로 일자리 창출과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다.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설립 이후 관련 법령 및 제반 서비스 규정에 따라 상인복지관이 위탁 운영되어 왔으므로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지만 민간시설이 가진 공공성과 안전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위탁 운영 방식은 후원금, 외부 지원금, 자체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 조달로 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 위탁운영을 통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운영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결여 ·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과 시설 운영 경험, 다양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 확보가 용이한 점 등에 비취볼 때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3년마다 보건복지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운영 시 별도 성과측정을 위한 측정지표 개발 및 전문가 자문 등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위탁운영 시에는 자체 욕구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외부자원 활용 및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운영의 경우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용이 · 위·수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지도·감독 및 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복지관의 경우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의 서비스 충돌이나 독과점 등의 폐해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판단됨

붙임 3 상인종합복지관 재위탁 추진 계획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계획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24. 7. 22.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우리 지역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0조

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법인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합리적 선정 기준과 객관적인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
- 위탁 심사 시 감사 지적사항 적극 반영

III 위탁개요

-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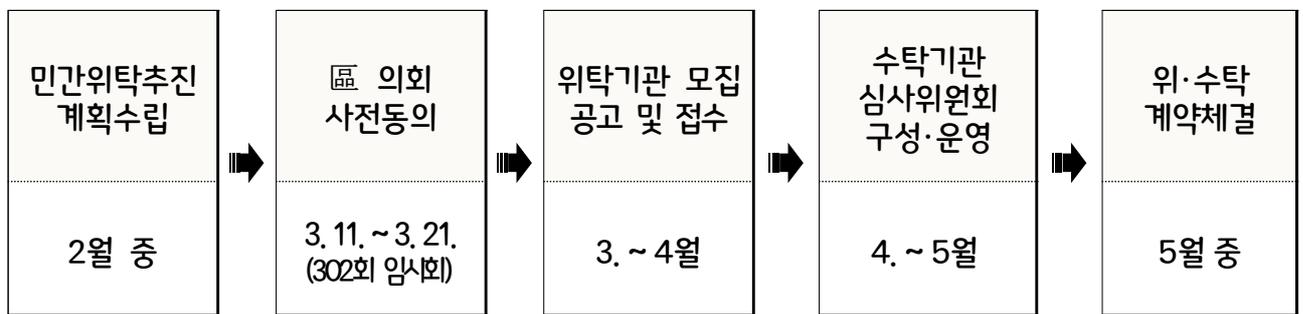
시설명	위 치	규 모	설치일 (최초위탁)	現 위탁현황	
				위탁기간	법인명
상인종합 사회복지관	상화로 371 (상인동)	2,896.59㎡ (지하1층,지상3층)	1994. 7. 22. (1994. 7. 22.)	2019. 7. 23.~ 2024. 7. 22.(5년)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 기 간 : 2024. 7. 23 ~ 2029. 7. 22. (5년)

□ 대상사무

- 상인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 사회복지관 사업(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등에 근거한 사무
- 기타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 추진절차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상 목적 사업이나 주요 사업 내용에 사회복지 사업이 포함 되어야 함.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고사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 사회복지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부담 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이 있는 법인

〈 신청제외 대상 〉

-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법인 이사장 포함)
- ▶ 사회복지사업관련 부실운영 또는 비리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법인
- ▶ 법인 및 산하시설이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위반사실 발견(확인)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선정

위탁운영 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위탁운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사회복지를 위해 일정규모 재정부담 필요
-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개발·추진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IV 세부추진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 기 간: 2024. 1. 8. ~ 1. 12.
- 방 법: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문화·보건 분과 위원 서면자문(4명) 검토
- 검토결과: **【붙임 2】**

區 의회 민간위탁 사전 동의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 기 간: 2024. 3. 11. ~ 3. 21.(제302회 임시회 예정)
- 내 용: 민간위탁 추진 區 의회 사전 동의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방법: 공개모집
- 공고기간: 2024. 3. 22. ~ 4. 5.(15일간)
- 접수기간: 2024. 4. 8. ~ 4. 15.
- 접수장소: 달서구청 행복나눔과 희망이음팀

- 접수방법: 방문제출(공휴일 제외, 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함
 - 신청서식: 달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식
 - 유의사항: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르는 책임은 신청 법인에 있음
- 재공고 및 접수: 2024. 4. 16 ~ 4. 22.(7일간)
 - 모집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만 신청했을 경우 재공고
 -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했을 경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일 경우 선정)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 구 성: 9명 이내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법률 전문가 등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 기: 4. ~ 5월
- 위원임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
-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심사계획: 별도계획 수립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5월중 / 5층 상황실(예정)
- 참석대상: 심사위원
- 심사방법: 선정심사 배점표에 의함
 - 사전 검토: 서류 검토(심의자료 사전 배부)
 - 당일 현장심사: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등 설명, 질의응답 등
- 심사기준: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등 종합적 평가

○ 심사결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 합산 평균이 높은 법인
- 동점인 경우 ①법인전입금이 높은 법인 ②보유자산이 높은 법인 순으로 결정
-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배점표에 따른 심사에 따라 평균 75점 이상

○ 결정통지: 심사결과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위·수탁 계약체결

○ 근 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일 시: 2024. 5월중

○ 주요내용: 위탁기간, 위탁사무, 수탁자 준수사항, 계약위반 시 책임 등

V

행정사항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구 -> 의회): 2024. 2. 26.(월) 限

※ 제302회 임시회 상정

모집공고 및 접수: 2024. 3. ~4월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4. 4.~5월

위탁계약 체결: 2024. 5월중

위탁 운영: 2024. 7. 23. ~